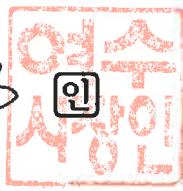
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 
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1 일

여수시장 2021.12.1  


여수시 조례 제1790호

붙임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부.

##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)**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(이하 “기본전략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속가능발전 현황,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
2.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
3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·사회·환경의 기본정책 방향
4.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구현, 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

5.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

6.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

7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분야별 시책의 소관 부서 등의 사항 일부 변경

2.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

3.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
4.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
5.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·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**제4조(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)**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·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

2.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

3.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
4.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

5.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5조(추진상황의 점검)**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,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

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6조(조례 제정 · 개정에 따른 통보 등)**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· 개정하려는 때에는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 · 장기행정계획을 수립 ·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 · 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 · 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 ·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,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**제7조(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· 보급)**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 ·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· 단체 등에 조사 ·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.

**제8조(지속가능성 평가)**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을 정도와 투입된 행

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·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)**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전략,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3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
4. 여수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
5. 그 밖에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 기관에 자료·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**제10조(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1. 위원장: 시장
2. 부위원장: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·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회의 운영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)**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위탁)**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,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여수시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표지수는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시 행계획,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

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.